

# 경·공매 지원서비스(특별법)

Korea Housing & Urban Guarantee Corporation  
집은 든든하게,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

경·공매 지원서비스(특별법)



경·공매 지원서비스 신청



## 경·공매 지원서비스 신청

### 경·공매 지원서비스 신청

1. 경·공매 지원서비스는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」에 따른 **전세사기 피해자**여야 하며, **‘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’**를 교부받으신 상태여야 합니다.

\*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관할지자체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2. 공사는 **경·공매 대행서비스 법무사 보수의 70%**를 지원하며, **집행권원 확보 비용, 입찰보증금, 법무사 보수 외 경매 집행비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**

**\* 경·공매 대행서비스 법무사 보수 공사 지원대상 (아래 법무사 보수표 기재대상만 지원)**

- 경매개시신청, 경·공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, 배당 적정성 확인 및 배당금 수령 관련 법무사 보수, 입찰신청대리, 우선매수권청구대리 관련 법무사 보수

※ 단, **경매신청 대행 법무사 보수의 경우** 해당 물건 경락 시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이 최우선 공제되므로, **피해자가 경매신청 시 법무사 보수 전액 지급 후 낙찰대금에서 환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기각되는 경우에만 공사에 70% 지급 요청**

3. 신청 후 자진 취하한 경매에 대하여 **법무사 보수를 지원 받는 경우, 추가 경매 신청에 대한 보수 지원은 불가합니다.**

4. **기 지출한 경·공매 관련 법무사 보수는 경매 절차 종료 후 공사가 법무사 협회와 책정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합니다.**

**- HUG 법무사협회 협의된 법무사 보수표 항목별 세부내역 (30%할인 적용금액) -**

(단위: 만원)

| 업무                   |   | 보수액<br>(VAT 포함)            | 임차인 부담<br>(30%) | HUG 부담<br>(70%) |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
| 경매<br>진입<br>단계       | 경매신청  | 소가 1억 이하                   | 30.8            | (9.2)           | (21.6)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| 소가 1억 초과                   | 37              | (11)            | (26)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※ 경매신청비용은 낙찰 시 환급되는 비용으로 본인전액부담<br>(기각되어 환급 불가 시 공사가 70%부담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         |   | 13.9                       | 4.2             | 9.7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배당 (배당적정성 검토+배당금 수령) |   | 7.7                        | 2.3             | 5.4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환가단계<br>(택1)         | ①우선매수권서면행사<br>(사전신고 후 불출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8.5            | 11.5            | 27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낙찰<br>(상담포함)  | ②우선매수권<br>출석행사<br>(입찰기일출석) | 1억<br>이하        | 46.2            | 13.9   | 32.3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| 1억<br>초과                   | 61.6            | 18.5            | 43.1   |      |
| 부속업무                 | 열람·복사 (1회 한정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1             | 0.9             | 2.2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채권계산서제출 (1회 한정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3             | 0.7             | 1.6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보정 (3회 한정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3             | 0.7             | 1.6    |      |

5. 신청인은 업무협약 법무사 중 1곳을 선택하여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 관할법원과 거리가 먼 법무사 선택 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. (공사는 위의 법무사보수표 상 비용만 지원가능)

6. 경·공매 지원 서비스 외 특별법의 다른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확인 여부를 체크(V)해주세요.

- 1. 본인은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」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확인합니다.
- 2. 경·공매 지원서비스는 법무사 매칭, 비용지원 서비스이며, 이후 경매신청, 권리신고 등 절차는 추후 매칭법무사와 진행하게 됩니다.
- 3. 신청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, 기재하신 이메일 및 핸드폰·문자·전화로 보완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
확 인